

창업중점교원인사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창업 중점 교원의 인사에 관한 절차와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창업 중점 교원이라 함은 창업지원, 창업교육·연구, 창업인프라 구축의 영역에서 산업체 경력을 바탕으로 대학 내 교원 및 학생들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창업특화형 교원을 말한다.

제3조(자격 요건) ①창업 중점 교원은 벤처 캐피탈(venture capital), 창업 및 회사 운영, 창업지원기관 근무경력 등 창업 관련 직무 종사 경력이 7년 이상인 자로 한다.

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관련 경력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.

1. 기업을 창업하여 연 매출 10억원 이상을 달성한 경험이 있는 자.
2. 창업기업 투자 업무에 5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자.
3. 엔젤투자지원센터에 등록된 엔젤투자자로 1억원 이상의 엔젤투자 실적이 있는 자.
4. 세무사, 회계사, 변리사, 경영지도사 등 기업경영 지도를 위한 자격을 보유한 자로서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보유한 자.

제4조(교원의 구분) ①창업 중점 교원은 비정년트랙 전임교원과 비전임 교원으로 구분한다.

② 전임교원인 창업 중점교원은 임용 방식에 따라 채용형과 지정형으로 구분하고, 지정형은 재직 중인 교원 중에서 제3조의 자격 요건을 갖춘 교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.

제5조(임용) ①신규 교원의 임용은 공개임용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 임용할 수 있다.

② 비정년트랙 창업중점 전임교원의 신규 임용은 교원인사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임용하고, 비전임 창업중점 교원의 임용은 따로 정한다.

제6조(임용기간) 창업중점 교원의 임용 기간은 1년으로 한다.

제7조(임용계약) 신규 임용되는 교원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한다.

3-2-37~2 제3편 행 정

1. 근무기간
2. 급여
3. 근무조건
4. 업적 및 성과에 관한 약정
5. 재계약 조건 및 절차

제8조(책임시수) ① 창업중점 전임교원의 주당 책임시수는 3시간으로 하며, 주당 6시간을 초과하여 강의할 수 없다.

② 창업중점 비전임교원은 필요시 강의를 배정할 수 있으며, 주당 6시간을 초과하여 강의할 수 없다.

제9조(처우) 창업중점 교원의 처우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제10조(재계약 임용 등) 창업중점 교원의 재계약 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.

1. 비정년트랙 창업중점 전임교원
 - 가. 비정년트랙교원 임용 내규 (별표 1)의 비정년트랙 교육업적평가 기준에 의한 평가점수가 80점 이상
 - 나. (별표 1)의 창업관련 교원업적평가 기준에 의한 평가 점수 150점 이상
2. 비전임교원
 - 가. 강의를 하는 경우 수업만족도 평가점수가 평균 80점(4.0) 이상
 - 나. (별표 1)의 창업관련 교원업적평가 기준에 의한 평가 점수 100점 이상

제11조(의무 및 금지) ① 본교에 임용된 교원은 학내 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복무하여야 하며, 본교의 교육목적 달성에 적극 협조하여 본교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.

② 책임시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학년도 계절학기 수업으로 보충할 수 있으며, 그럼에도 불고하고 책임시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강의담당 시수에 관한 규정 제6조 제3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급여에서 공제한다.

③ 창업중점교원의 휴직은 불허한다.

④ 창업중점교원은 다른 기관에 출강하거나 겸직할 수 없다.

제12조(면직) ① 계약기간 중 법령 또는 관련 규정에서 정한 면직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면직할 수 있다.

② 계약기간 동안 학기 중에는 사직할 수 없으며 학기말로 의원 사직하는 경우 퇴직 희망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3조(준용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원인사규정 등 관련 규정을

준용하고,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7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(별표 1)

창업관련 교원업적평가 기준

분야	평가항목	세부항목	배점	배점 방식	최대가능점수
창업지원	멘토링 및 기술지도	창업자 멘토링	1	1회	30점
		기술경영 자문	2	1회	20점
	지적재산권 확보	국제발명특허 출원	5	1건	제한 없음
		국제발명특허 등록	30	1건	제한 없음
		국내발명특허 출원	5	1건	제한 없음
	국내발명특허 등록	10	1건	제한 없음	
창업 교육·연구	진로지도	창업동아리 지도	5	1팀	30점
		선배기업 연계 및 홍보	5	1건	제한 없음
		창업기업 배출	10	1건	제한 없음
	창업교육	창업교육프로그램 개발	5	1건	30점
		창업현장 실습 지도	5	1회	30점
	연구기획	정부과제 연구비 수주	이공계열 : 1점/백만원 그 외 계열 : 2점/백만원	1건	제한 없음
산업체 연구비 수주		이공계열 : 3점/백만원 그 외 계열 : 6점/백만원			
창업 인프라 구축	제도개선	창업친화적 학제 구축	20	1건	제한 없음
	특화프로그램 개발	창업지원 프로그램(자율·특화)개발	5	1건	20점
	지역네트워크	자자체 창업지원시책 기획	10	1건	30점